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시 당연 계약해지 등〉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77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성폭력 등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시 당연 계약해지 등	3
2.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등의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 참석 및 의견 청취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기현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5. 7.

3. 회 부 일 : 2026. 5.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고,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만 참여하게 하고 있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의 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체육진흥중앙위
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6조).

Ⅲ. 검토의견

1. 성폭력 등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시 당연 계약해지 등(안 제12조)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학교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성폭력 등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계약 해지를 해야 하고(제4항),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의 정지를 명하며, 학생선수와 분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제8항).

또한, 학교장의 계약 해지 미이행시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며(제6항), 학교장이 계약을 해지 한 경우 교육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제7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 ③ (생략)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授受)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금 품

----- . 다만, 폭력, 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의장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교육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제4항 단서에

⑥・⑦ (생략)	<u>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의 정지를 명하고,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분리하여야 한다.</u> ⑨・⑩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1) 중대한 인권침해시 계약 해지 의무화 및 분리 조치

-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금품·향응 수수(授受)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생략)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2) 교육부는 학교장 계약 지도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징계 심의 및 징계처분 이후 징계 수

□ 개정안은 폭력과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계약 해지를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국민체육진흥법」 3)에서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선수에 대한 상해·폭행 등을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또는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인권

위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정해진다고 설명함(붙임 참조).

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마.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침해 행위를 계약해지의 당연 사유로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입법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의 정지를 명하고,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분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학생선수의 경우 대다수가 18세 미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⁴⁾상 아동에 해당하는데, 동법에서는 폭력 등 아동학대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학교장은 응급조치 의무가 없음.

개정안은 학교장에게도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분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므로, 학생선수의 신속한 보호와 추가 피해방지 등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다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다만, 관련 조사 및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 정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직무정지 및 분리 조치의 기간 또는 해제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이견 없다는 의견이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직무정지·분리 조치의 기간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 심의 및 진행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교육감의 계약 해지 명령 근거 마련

□ 개정안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⁵⁾은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⁶⁾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이 학교운

5)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6)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관리·감독·지도 및 부당한 계약해지, (성)폭력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체육담당 부서 관계자와 유관기관 담당자, 학부모 등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2025년 상/하반기, 2026년 상반기 회의를 개최 한 바 있음

동부지도자를 부당하게 계약 해지한 경우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반대로 학교장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장의 계약 해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을 보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이견 없다는 의견임.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제출]

<시·도교육청>

- (서울, 대전, 울산, 경남) 이견없음
 - 학교장에게만 부여된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 권한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한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여 학생선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대구) 신중검토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관리 책임의 주체는 학교장인 상황에서 교육감이 계약해지 할 경우, 향후 노동분쟁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학교장의 인사·관리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 우려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를 위한 통보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⁷⁾」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체육지도자

7)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

등에 대한 징계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하여 이를 관리·공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계약 해지는 별도의 징계처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계약 해지 사실이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공유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국민체육진흥법」⁸⁾은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거나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

다)에 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2. 1.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2. 1. 18.>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2022. 1. 18.>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8)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2020. 8. 18., 2020. 12.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 박탈, 폭력, 금품·향응 수수 및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교육감이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개정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중대한 비위행위 등을 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체육지도자로 다시 활동함에 따른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이견 없다는 의견임.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제출]

<시·도교육청>

- (서울, 대전, 울산, 경남) 이견없음
- 자격취소 연계를 통해 재취업에 따른 재발 방지 효과 기대

2.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등의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 참석 및 의견 청취(안 제16조제3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생 대표의 참석에 관한 사항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는 교육부장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 대표의 참석에 관한 사항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는 교육부장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교육감이 정한다.</u>

③ · ④ (생 략)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동 위원회의 중요 사항의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과정에 정책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학생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체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인 만큼, 학

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 대표의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및 현장 수용성 제고, 학교체육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 기대되므로 이견 없다는 의견임.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제출]

<시도교육청>

○ (서울) 이견없음

- 학생선수 등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학교체육 발전 방안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 마련 측면에서 입법 취지에 부합함

○ (대구, 울산) 신중검토

- 학생대표가 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대표성 있게 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개인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음
- 학생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심의 기구의 전문성 저하, 참여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 형식적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우려
- 직접 참여보다는 설문조사, 간담회 결과 보고 등 간접적인 의견 반영 적합

문 의 처

02)6788-5186

